

2025년 무안군가족센터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강사 신규 채용 계획 공고

무안군가족센터에서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강사를 다음과 같이
신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6월 2일
무안군가족센터장

1. 채용 분야

채용분야	○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강사 3명
활 동	○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 운영 ○ 시간강사 : 1회당(20~25분)
수 당	○ 활동비(회당) 30,000원
응시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결혼이민자 ○ 다문화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제출서류	① 강사지원서(별지1) ② 자기소개서(별지2) ③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3) ④ 자격증 사본(다문화강사 수료증 등) ⑤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⑥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⑦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2 . 전형 방법

전형구분	전 형 방 법
1차	서류전형(자격 및 경력에 대한 요건 심사)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만 면접 심사)

3 . 일 정

가) 접수기간: 2025. 6. 16.(월) ~ 2025. 6. 27.(금)18:00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면 접 일: 2025년 7월 중(서류합격자 추후 공지)

다)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라) 접 수 처: 무안군가족센터

- 주소: 58528 전남 무안군 무안읍 면성1길 130 /무안군복합문화센터 2층

- E-mail: muan2009@hanmail.net

4 . 기 타

가) 강사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미 채용자는 본인의 반환 요구서 제출 시 반환 가능(서식별첨)

※ 「채용절차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최종 합격 공고 30일 후 파기

다) 합격자가 합격 포기 및 결격사유,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차순위 합격자(본인 희망시)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라) 적임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발표 및 통지: 1차, 2차 합격자 발표는 가족센터 홈페이지(familynet.or.kr 무안군가족센터) 채용공고란 게시 및 개별 통지합니다.

바) 문의: 061-452-1813(채용 담당자)

(별지1)

강 사 지 원 서

접수번호:

분 야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강사			
성 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직무관련 학교교육	년 월 (과 년) 졸업			
직무관련 경력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당업무
직무관련 자격증	자 격 증 명	취 득 일	발급기관	
본인은 무안군가족센터 강사채용에 지원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별지2)

자 기 소 개 서

※ 특별한 양식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1~2매 이내)

- 자기소개, 지원사유, 경력 등을 작성

작성자 :

(별지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무안군가족센터는 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출신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 기간에만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무안군가족센터 귀하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별첨>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